

[별표 2]

기록·비치하여야 할 사항(제9조관련)

기 록 사 항	기 록 시 기	보존기간
1. 방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과 반입되는 물품의 검색 기록	검색한 때마다	10년
2. 방호구역에 대한 탐지 및 순찰 기록	탐지 및 순찰한 때마다	10년
3.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 실시 기록	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때마다	5년
4. 물리적방호 시설·설비 등의 설치·점검 및 보수 기록	설치·점검 및 보수한 때마다	5년
5. 물리적방호 시설·설비의 설치에 관한 설계 기록	설계한 때마다	5년
6.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	대응조치한 때마다	20년